

의안번호	2215346
의 퇴 인	이원택 의원
회 답 일	2026. 4. 17.
추계번호	25B7118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림수산물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7억 7,000만원(연평균 3억 5,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안 제4조의2)	354	354	354	354	354	1,770	354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의2(실태조사)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물투자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	안 제4조의3(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농림수산물투자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음.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3	안 제4조의4(농림수산물투자 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농림수산물투자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농림수산물투자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1. 농림수산물산업 육성 및 농림수산물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국내외 농림수산물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3. 농식품경영체 및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의 해외 진출 및 해외투자 지원 4. 농식품분야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농림수산물투자 협의체 결성과 운영 지원 6. 농림수산물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7. 농림수산물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8. 농림수산물투자 촉진을 위한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교류 지원 9.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	재량규정
4	안 제9조제3항(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출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의2(실태조사) 신설	○	•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2	안 제4조의3(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림수산물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농림수산물투자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한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축 대상 정보망 규모 및 구축·운영·유지·관리 비용 등은 ISP를 거쳐야 파악이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안 제4조의4(농림수산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림수산물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농림수산물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농림수산물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안 제9조제3항(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출자의 방법·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림수산물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림수산물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7억 7,000만원(연평균 3억 5,400만원)으로 추계
 - － 농림수산물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유사 실태조사 관련 사례

(단위: 백만원)

실태조사	실태조사 내용	2026년 예산
유통실태조사	유통경로, 유통비용 등 조사·분석을 통해 유통개선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400
수산물통계 실태조사	수산물통계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계절별, 지역별 수산물통계 법정 통계·실태조사 추진	308
평균		35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표 3]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354	354	354	354	354	1,770	354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